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휘발유, 경유규격 대폭 강화

**환경처**는 지난 1월 10일 자동차 배출기준의 대폭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은 휘발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규격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온 유연휘발유의 제조를 금지하고 오는 2000년부터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현재 美國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자동차는 연료를 휘발유나 LPG로 바꾸거나 인터쿨러 터보차저등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시행규칙은 오는 '96년부터 지프, 소형승합(15인승

이하) 소형화물(3톤이하)등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휘발유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되고 농도규제를 중량규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휘발유와 LPG자동차에만 적용해오던 배출가스 보증제도도 '93년부터는 소형경유차, '96년부터는 중량자동차에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사용 소형화물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오는 '96년 1월부터 일산화탄소의 경우 km당 6.21g이하, 질소산화물 km당 1.43g, 입자상물 km당 0.16g이하로 강화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연료 또는 첨가제의 기준(제93조 관련)

기준항목	연료의종류		휘발유	경유
	리서취법	모오터법		
옥탄값	91 이상	83 이상		
세탄값			50 이상	
10% 분류성상 유출온도 (°C)	70 이하			
90% 분류성상 유출온도 (°C)			330 이하	
10% 잔류탄소 (%)			0.10 이하	
증기압 (37.8°C, kg / cm <sup>2</sup> )	0.45~0.85			
동점도 (cst. 37.8°C)			1.4~2.5	
색상	노란색			
방향족 화합물 (부피 %)	45 이하			
벤젠 (부피 %)	5.0 이하			
올레핀 (부피 %)	15 이하			
황분 (무게 %)	0.05 이하		0.20 이하	
납 (g / l)	0.013 이하			
인 (g / l)	0.0013 이하			
산소함량 (무게 %)	2.0 이상			

- (주) 1. 옥탄값은 리서취법 또는 모오터법 중 택일하여 시험하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 중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2. 방향족화합물, 벤젠 및 올레핀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3. 경유의 황분은 1993. 1. 1부터 적용한다.
4. 납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5. 산소함량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